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83호
- 나. 제출자 : 정순기 의원, 김용술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호, 안 제2조제2호, 안 제9조제1호).
- 나. 조명 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 다.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 추가(안 제4조제3호 신설).
- 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신설(안 제7조제3항 신설).
- 마.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바. 자구 정비(안 제9조제4호).

4.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44조, 제50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9조제1호에서는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위기대응 협의체 기능에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그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2024.7.3. 시행)에 맞춰 부칙에 규정함.
- 아울러 일부 조명을 정비하고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함.
-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시행일: 2024. 7. 3.] 제11조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

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
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
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
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
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
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